

「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선산문화회관 사용료 관련 규정과 그 외 사항을 정비하여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문화회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납부기한의 명확화 등 사용료 관련 정비(안 제8조제1항, 별표)
- 나. 인용조항 삭제에 따라 실효된 조항 정비(안 제8조제5항)
- 다.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~제6조, 제8조~제12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117조, 제153조, 제156조, 제161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선산문화회관의 원활한 관리·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인용조항 삭제에 따라 실효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8조제1항에서 회관의 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당초 ‘사용 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’ 납부하도록 한 것을 ‘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도록’ 납부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, 3일 이내 신청 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는 선산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익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.